

직제규정

제정 2009.01.01 27차 개정 2026.06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대학의 직제는 법령, 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, 본 대학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무분장 및 업무의 위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과 업무의 위임 범위는 따로 정한다.

제2장 편 제

제4조(기구)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

1. 본 대학에는 총장과 부총장, 학사1부총장, 학사2부총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산학협력단장, 총무처장을 둔다. 단, 명예총장, 산학협력부총장, 대외부총장, 학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7.1., 2017.1.1., 2017.9.15., 2020.08.24., 2021.2.22., 2022.2.28., 2022.10.4., 2025.6.16.>
2. 본 대학에는 교육혁신본부, 교무처, 입학처, 총무처 등의 행정부서를 둔다. <개정 2016.7.1., 2017.9.15., 2020.8.24., 2022.10.4., 2025.6.16.>
3. 본 대학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. <신설 2025.6.16., 2025.8.26.>

② 총장은 교육·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구 외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.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위원은 총장과 부총장, 학사1부총장, 학사2부총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산학협력단장, 총무처장으로 보임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1.1., 2017.9.15., 2018.9.10., 2020.2.17., 2020.8.24., 2022.10.4., 2025.6.16.>

제5조(총장)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, 교무를 총괄한다.

② 총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7.1.,

2017.1.1., 2017.9.15., 2022.10.4.>

③ 외국인 교원이 총장이 되는 경우 그 총장의 직무범위는 따로 정한다.

제5조의2(부총장) 부총장은 대학 학사 및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.

[본조신설 2025.6.16.]

제5조의3(학사1부총장) ① 학사1부총장은 교육혁신본부, 입학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.

②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1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6.16.]

제5조의4(학사2부총장) ① 학사2부총장은 교무처,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.

②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2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6.16.]

제5조의5(산학협력부총장) 산학협력부총장은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.

[본조신설 2025.6.16.]

제5조의6(대외부총장) 대외부총장은 대외 홍보 및 협력 업무와 우송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.

[본조신설 2025.6.16.]

제6조(행정부서) ① 본 대학의 행정부서 중 본부에는 본부장을, 처에는 처장을, 단에는 단장을 둔다. <개정 2022.10.4.>

② 본부장과 처장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③ 처 또는 단에는 부처장, 실장 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총장, 처장 및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.>

④ 행정부서의 하부조직으로 실 또는 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10.4.>

제6조의2(교무기획본부장) 삭제 <2018.3.5.>

제6조의3(입학학생복지본부장) 삭제 <2018.3.5.>

제6조의3(입학학생본부장) <신설 2022.2.28.>, 삭제 <2022.10.4.>

제6조의4(교육혁신본부) ① 교육혁신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, 부서 및 학과 발전 계획 수립, 내부감사, 대학 정보공시제도 총괄관리, 교육통계 관리, 학칙 및 제규정 제·개정, 제위원회관리, 교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, 학생정원조정, 표준분류체계 관리,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업무, 대학평가 관련 업무, 만족도 조사 업무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. <개정 2025.6.16.>

2. 학생(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.)에 대한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, 동아리(전공 및 창업분야 제외) 활동 지원업무 등, 학생장학 관련 제반 업무.

3. 학생 취업관리에 관한 업무, 취업통계조사, 취업률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, 학생경력 개발 및 운영, 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.

4.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.

② 교육혁신본부에는 기획실, 성과관리혁신실, 학생복지팀, 장학팀, 취업팀을 둔다.

[본조신설 2022.10.4.]

제7조(교무처) ① 교무처는 학사과정 전반의 교무 및 학적에 관한 업무(외국인 학생의 교무·학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.)와 교양교육과정 운영, 본 대학의 학술진흥과 연구의 지원, 우송요람 제작,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6.7.1., 2018.1.1., 2025.6.16.>

② 교무처에 교무팀, 교육지원팀을 둔다. <개정 2016.7.1., 2016.8.1., 2020.2.17.>

③ 삭제

제8조(학생복지처) 삭제 <2022.10.4.>

제9조(입학처) ① 입학처는 학생(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.) 선발 기본계획의 수립·운영, 입학시험 관리, 입시결과 평가·분석업무, 대학 홍보계획 수립·운영, 대학 홈페이지 관리, 자유학기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6.8.1., 2017.1.1.>

② 입학처에 입학팀과 입학홍보팀을 둔다. <개정 2016.8.1., 2018.3.5., 2022.10.4.>

제9조의2(취업처) 삭제 <2022.10.4.>

제10조(산학협력단)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관·산·학 협력을 촉진하고 본 대학의 학술진흥과 연구의 지원 및 관·산·학 관련 업무,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,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관리, 발전기금 조성, 학교기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팀과 운영지원팀을 둔다. <개정 2017.1.1., 2018.3.5., 2022.2.28.>

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.2.28.>

제11조(총무처) ① 총무처는 문서관리 및 보안비밀관리, 행정편제 및 사무분장의 조정, 교원(초빙·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.)의 인사관리, 직원의 인사관리, 교원 및 직원의 보직발령, 보수와 이와 관련된 업무, 자금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,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, 학교기업의 설립, 시설물 증·개축 및 개보수에 관한 업무, 물품구매 및 관리,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및 유지관리, 서무업무, 시설물·차량유지관리 및 기숙사 관리 업무, 교육 및 연구공간 조정업무 및 다른 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을 관장한다. <개정 2017.9.15., 2018.1.1., 2025.6.16.>

② 총무처에 총무과, 구매관리과를 둔다. 단, 총무처장의 궐위 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7.9.15., 2020.2.17., 2022.10.4.>

③ 총무과에 총무팀, 인사팀을 두며, 구매관리과에는 구매관리팀과 안전관리팀을 둔다. <개정 2018.9.10., 2020.2.17., 2022.5.2., 2022.10.4.>

제11조의2(관리처) 삭제 <2017.9.15.>

제12조(기획처) 삭제 <2022.10.4.>

제12조의2(발전기획단) 삭제 <2020.8.24.>

제12조의3(스마트팩토리스쿨) 삭제 <2025.2.24.>

제12조의4(K-마이스터스쿨) ① <신설 2021.8.9.> <개정 2025.2.24.> 삭제 <2026.6.1.>

② 삭제 <2026.6.1.>

③ 삭제 <2026.6.1.>

제12조의5(스마트철도스쿨) 삭제 <2025.2.24.>

제13조(한시조직) 총장은 특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4.>

제14조(위원회) ① 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별 기능·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우송도서관) ①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우송도서관을 둔다.

② 우송도서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다.

제16조 삭제

제17조(부속·부속교육기관) ① 본 대학에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부속·부속교육기관과 부설 연구기관을 둔다. <개정 2025.6.16.>

② 각 부속·부속교육기관은 「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」에 따라 대학본부 내 행정 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부서별 소관 부속·부속교육기관은 [별표 1]에 따른다. <신설 2025.2.24.> <개정 2025.6.16., 2025.8.26.>

③ 본 대학에 두는 부속·부속교육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의 종류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5.2.24., 2025.6.16.>

제3장 보직 및 임기

제18조(보직) ① 삭제 <2025.6.16.>

② 삭제 <2022.10.4.>

③ 학사1부총장보, 학사2부총장보, 학장, 본부장, 처장(총무처장을 제외한다), 단장, 실장 및 부속기관의 장은 본 대학의 교원으로 보하며, 총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7.9.15., 2021.2.22., 2022.10.4., 2025.6.16.>

④ 센터장 및 부속기관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
⑤ 총무처장 및 팀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않는 다른 보직자는 총장이 임면한다.

제19조(보직자의 연임) 삭제 <2022.10.4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특례) 이 규정은 2013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특례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12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7조 및 제8조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7조(교무처)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특례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2월 1일자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월 11일자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자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특례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